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9년 10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11월 5일

3. 제안이유

차량통행량이 적고 통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측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연결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별표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개정

- 측도의 차량통행량, 통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본선의 변속차로 설치길이보다 완화한 기준 신설
- 태양광발전시설에 연결하는 변속차로 설치기준 신설  
(도로 모서리 곡선화)

## 5. 검토내용

###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19. 3. 11. 개정됨에 따라 차량통행량이 적고, 통행속도가 빠르지 않고 변속차로가 길지 않아도 안전이 확보되는 측도에 연결되는 시설 별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하는 한편,
  - 차량통행량이 적은 태양광발전시설에 연결하는 변속차로의 경우 곡선 반지름 3미터인 도로 모서리 곡선화로 설치하도록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입법예고('19. 9. 27.~'19. 10. 17.)를 통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차량통행량이 적고 통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측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완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연결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